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68
----------	------

2023년 9월 5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3년 8월 14일
- 다. 회부일 : 2023년 8월 21일
- 라. 상정일 : 제320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년 9월 5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 가.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연계, 청년의 사회적 안전망 제공 및 고립·은둔 청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서울시 청년정책의 일선 집행체계로서 생활권 기반 청년 종합지원을 위하여
- 나.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 다. 청년 활력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10 (480.71 m^2)
- 공간구성 : 상담실, 라운지, 공유주방, 회의실, 사무실 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 (2년)
- 위탁업무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사업 및 시설 운영
 -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협력 사업
 -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 시설·물품 등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등
- 소요예산 : 621,603천원 ('24년 예산편성안 기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청년시설 관리·운영에 대해 민간의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자원과의 적극적 연계 협력을 추진,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3. 7. 20.) : 적정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번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23.12.31.)인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의 운영 및 시설관리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2년간 재위탁('24.1.1.~'25.12.31.)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나. 검토 내용

(1) 운영 현황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이하 '동대문 오랑')은 시설형 민간위탁¹⁾ 유형으로 '19.12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²⁾를 받아 '21.2월 개관³⁾하였으며, 이후 '22.11월 재위탁 동의안⁴⁾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위탁운영 중임

1) 시설형 민간위탁(예산지원형)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

2)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코로나19 이용 제한으로 시설개관이 지연되었음

4) 서울특별시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동대문 오랑'의 최초 위탁운영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사)서울유스랩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7월부터 '22.12월까지 운영하였고, 이후 재위탁 공개모집에서는 (사)희망유니온이 새롭게 선정되어 '23.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임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민간위탁 추진 경과

- '19. 12. 16. : 청년공간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
- '20. 12. 15.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시설 준공
- '20. 7. 23.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 위·수탁기간 : 2020.7.23.~ 2022.12.31. (3년), (사)서울유스랩
- '21. 2. 22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개소 및 운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대시민 대상 시설 개관 지연
- '22. 9. 2. :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평가심의 적정
- '22. 12. 16.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시의회 가결
- '23. 2. 22.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 위·수탁기간 : 2022.3.1.~ 2023.12.31. (10개월), (사)희망유니온
- '23. 7. 20. :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평가심의 적정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현황 >

- 위치/규모 : 동대문구 왕산로 210 지상 1~3층, 480.71㎡ (연면적)
- 위치도 및 시설사진

위 치 도	시 설 사 진	
		
청량리역 4번 출구 도보 3분	외부전경(단독건물)	내부전경(1층)

- 운영시간 : 평일 10:00~22:00, 토요일 10:00~17:00 ※일요일·공휴일 휴관
- 이용대상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시설관리 : 시민이용관리, 유지보수, 안전관리, 대관운영 등
- 물품관리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비품 및 소모품 관리

○ 시설현황 : 상담실, 라운지, 공유주방,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

층수	구역/격실 명칭	세부 용도	면적(m ²)
1층	다독다독	- 도서 이용(센터 내), 각종 소식지 비치	15.96
	빛들마루	- 스터디, 소규모 네트워킹 및 공연	72.27
	공유주방	- 다과 이용 및 간단 조리시설	4.90
	운영사무실	- 동대문오랑 운영사무	37.33
	창고(계단 하부공간)	- 각종 비품 및 운영물품 보관	8.55
2층	나래오랑1	- 공용복합기 이용실	6.12
	나래오랑2	- 보조상담실 및 비대면 프로그램 진행실	6.12
	나래오랑3~4	- 회의 및 스터디(6~8명)	12.24
	나래오랑5	- 독립 휴게실	8.41
	라디오랑	- 유튜브 채널 운영(촬영 및 녹음) - 온라인 면접 및 회의 공간 지원	8.41
	회의오랑	- 소규모 회의 및 스터디(4명)	10.24
	상담오랑	- 대면/비대면 상담 업무	5.94
	빛들마루	- 스터디, 개인 사무 및 휴게 공간	67.2
3층	탕비실	- 식수 및 다과 이용	5.76
	누리오랑	- 강연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74.66
	하늘정원 청량	- 야외 휴게 공간	77.32

□ 서울청년센터 민간위탁 사무 세부내용

분류	연번	세부사무
① 사업운영	1	청년 종합상담 및 자원 연계
	2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3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청년센터 홍보 및 운영
	5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② 시설운영	6	서울청년센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 서울청년센터 사업운영 계획(안)

세부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①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오프라인) 종합상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종합적인 상태와 욕구 파악 및 분류 - 청년 개별 욕구에 맞는 정책정보 및 자원연계 - 권역 내 청년수당 참여자 상담 안내 ● 소통채널(온라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소통 가능한 온라인 채널 운영(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 (기능특화) 고립·은둔청년 전문 상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청년 대상 전문 상담 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 자원연계 등
② 청년지원정보 집적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내 청년지원정보 집적(지역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자체 청년정책 및 공공기관 사업, 지역 내 청년활동, 기타 민간기업 청년지원사업 정보 등 집적 ●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내 청년 대상 정기적인 정보제공서비스 운영(동네정보포럼)

세부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③ 커뮤니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형 커뮤니티 기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망 형성 중심형 : 일상적인 주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모임 - 콘텐츠 경험 중심형 : 전문 콘텐츠에 기반한 모임 ● 자발적 커뮤니티 기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자발적인 관계형성 및 기회마련을 위한 모임 운영·지원 ● (기능특화)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 커뮤니티 기획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 및 활동 모임 운영·지원
④ 청년센터 홍보·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센터 이용 및 방문 촉진을 위한 대내외 홍보 운영 - 지역별 공간 특화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능특화) 고립·은둔청년 공동작업 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응 및 관계회복을 위한 공동작업 특화운영
⑤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권역별 청년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사업'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조사 기반의 대상 맞춤형 청년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현장 대민형 지원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 발굴 - 청년 프로그램 개발·관리를 위한 민간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2) 민간위탁 평가 결과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재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생략)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 ⑤ (생략)

- “‘동대문 오랑’ 운영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살펴보면, 수탁기관인 (사)희망유니온은 공통사무평가(사업인프라, 사업활동)와 개별사무평가(사업성과, 지도점검 이행노력), 사용자만족도(만족도 제고 노력) 평가 및 감점 사례 등을 종합하여 총 80.40점을 득하였음
- 평가기관의 종합의견으로는 2022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동대문 오랑’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설계한 청년 생활 법률 프로그램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우수정책사례를 창출한 점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업목표 설정, 지역특화 사업의 발굴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영역	평가범주	지표배점	득점
공통사무평가	사업인프라	19.00	11.74
	사업활동	13.00	10.15
개별사무평가	사업성과	48.00	40.31
	지도점검 이행노력	5.00	5.00
사용자만족도평가	만족도 제고노력	15.00	13.20
감점사례	협약사항 위반 (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보증내용 위반 등)	-21.60	-
합계		100.00	80.40

(3) 민간위탁 심의 결과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함께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을 받았으나, ‘동대문 오랑’을 포함하여 서울시가 자체 운영 중인 ‘서울청년센터’ 4개소(강서·금천·동대문·서초 오랑)의 자치구 이관을 해당 자치구와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권고받았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 ① 시장은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3. 위탁사무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2023.7.20.]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 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비 고
서울청년센터 강서, 금천, 동대문, 서초오랑 운영	시설형	재위탁	-	2년	적정 (권고)	- 자치구와 빠른 협의 필요 (센터 자치구 이관)

- 서울시는 ‘서울청년센터’ 4개소(강서·금천·동대문·서초 오랑)의 자치구 이관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와 긴밀히 논의⁵⁾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센터 조성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자치구 재정부담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 또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 1개소의 청년센터 설치·운영을 목표로 청년센터 미운영 자치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서울청년센터 설치현황

- 청년센터 운영 자치구 : 15개 (※서울시 자체운영(4) : 동대문, 강서, 금천, 서초)
(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금천, 영등포, 관악, 서초, 강동)
- 청년센터 미운영 자치구 : 10개 (종로, 중구, 용산, 중랑, 성북, 양천, 구로, 동작, 강남, 송파)

※ 미운영 자치구 구분

- ① '무중력지대' 전환 대상 : 2개구 (성북, 양천)
- ② 미설치 : 7개구 (종로, 중구, 중랑, 구로, 동작, 강남, 송파)
- ③ 활동지원센터(광역센터) : 1개구 (용산) ※ **활동지원센터에서 청년센터 역할도 겸함**

구 분	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청년센터	15				1	1	1			1	1	1	1	1	1		1		1	1		1				1

5) '23. 4. 13. 서울청년센터 운영 이관 시구 협력회의 개최 (사업설명 및 의견제출요청)
'23. 5. 3. 자치구 정책 현황 및 의견 회신

- '23.3월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비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 신설됨에 따라 청년시설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23.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도 청년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23.10.25.) 예정이므로,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인 '서울청년센터' 4개소(강서·금천·동대문·서초 오랑)의 자치구 이관을 적극적으로 추진에 나가야 할 것임
- 다만, 자치구 운영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가 서울시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자치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년기본법」 (2023. 3. 21. 개정, 2023. 9. 22. 시행)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서울광역청년센터', 자치구별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청년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 '서울청년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제8813호,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또한, 개정된 「청년기본법」(’23.10.19. 시행)은 국무총리에게 청년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현재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에 제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서울청년센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 청년지원센터 지정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번 동의안의 ‘서울청년센터’ 시설 및 인력·조직 등을 살펴봤을 때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시한 청년지원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청년기본법」 (2023. 7. 18. 개정, 2023. 10. 19. 시행)

제24조4(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

-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 ② (생략)
- ③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 ⑤ (생략)
- ⑥ 그 밖에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추진현황 : 2023. 8. 29 법제처 심사완료 ▶ 향후절차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제21조의5(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① 법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 2.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 3.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둘 것
 - 4. 종사자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지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상담실 및 교육실을 각각 1개 이상 둘 것
 - 2.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둘 것
 - 3.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1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둘 것
 - 4. 업무를 수행하는 3개 이상의 별도 부서를 둘 것
 - 5. 최근 3년간 청년지원, 청년발전 또는 청년정책 관련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민간위탁 정산 결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시 위탁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결산자료 비교·분석 및 당해 연도 예산액 등을 기초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세부 항목의 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하되 사업의 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⁶⁾를 제외하고는 총 위탁사업비(수탁기관 세출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동대문 오랑’의 정산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센터 개소 이후 인건비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위탁사업비의 50.1%를 차지하였고, 2023년 회계연도 예산에서도 49.8% 비중을 보이므로, 위탁사업비 세부 항목 간 적정 비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와 노력과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구조와 수행 방식에 개선방안 마련이 요망됨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최근 3년간 정산 결과

<2020년 회계연도>

(단위: 원)

센터명	구 분	예산교부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C)	집행률(B/A)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계	342,839,000	328,602,657	14,236,343	96%
	인건비	113,588,964	104,999,002	8,589,962	92%
	운영비	42,078,436	36,731,883	5,346,553	87%
	사업비	187,171,600	186,871,772	299,828	100%
	위탁수수료	9,800,000	9,800,000	-	100%

<2021년 회계연도>

(단위: 원)

센터명	구 분	예산교부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C)	집행률(B/A)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총계	593,312,000	583,325,315	9,986,685	98%
	인건비	275,805,425	273,953,442	1,851,983	99%
	운영비	117,055,135	113,060,552	3,994,583	97%
	사업비	200,451,440	196,311,321	4,140,119	98%

6) 불가피한 경우(예시) : 청소 등 성격상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사무

<2022년 회계연도>

(단위: 원)

센터명	구 분	예산교부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C)	집행률(B/A)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총계	575,000,000	569,360,677	5,639,323	99%
	인건비	288,276,134	287,444,163	831,971	100%
	운영비	140,865,066	138,742,900	2,122,166	98%
	사업비	145,858,800	143,173,614	2,685,186	98%

(5)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

- 최근 3년간의 ‘동대문 오랑’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2건, 2023년 상반기 2건의 지도점검을 받아 이를 시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재위탁 수탁운영 시에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등 사례교육 및 자체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동대문 오랑 지도점검 조치결과

구분	점검분야 및 제제조치				조치결과
	총계	회계	전문기술(관리)	운영성과	
2020년	4	주의 2	주의2		완료
2021년	7	주의 3, 서면경고1	주의 1	서면경고 2	완료
2022년	2	주의 1	주의 1		완료
2023(상반기)	2	주의 2			완료

(6)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검토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바, 소관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와 청년지원시설·공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그간의 서울시 청년공간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청년사업과 정책의 특성을 이해하고 높은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희소하여 수탁단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보았을 때, 향후 수탁기관 선정 기준 수립 시 경쟁력 있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하겠음
- 또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적격자 심의과정에서 적격자심의위원으로 청년위원을 위촉하거나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청년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이는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의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내용을 근거로 하여, 「민간위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과 상충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음 (붙임 1 참조)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23.12.31.)인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의 운영 및 시설관리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2년간 재위탁(24.1.1.~25.12.31.)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청년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례 및 규정과 사전절차를 준수하였음
- 다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인 “‘서울청년센터’ 4개소(강서·금천·동대문·서초 오랑)의 자치구 이관”을 위탁 기간 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고, 적격자 선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⑤ (생략)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년친화위원회를 선정하고 해당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청년친화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제10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년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 ⑥ (생략)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① ~ ④ (생략)
- ⑤ 시장은 서울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 ⑥ ~ ⑧ (생략)

시 설 명	소재지	규모	인력	운영방법	수탁기관	위탁기간	개관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센터	용산구 원효로 97길 15	2,281㎡	25	서울시 민간위탁	(재)서울현대교육재단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 협회	'21.7.1.~'23.12.31. *재위탁 1회	'16.7.	
서울 청년 센터 (15)	관악	관악구 신림로 91, 302호	329㎡	6	자치구 민간위탁	(사)꿈지락네트워크	'19.7.1.~'24.9.30. *재계약 1회	'20.2.
	금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G밸리창업복지센터 1~2층	345㎡	6	서울시 민간위탁	(재)서울현대교육재단	'23.3.1.~23.12.31. *재위탁 1회	'20.2.
	강동	강동구 올림픽로 796, 4층	403㎡	6	자치구 민간위탁	미담장학회	'23.1.1.~ 25.12.31. *재위탁 1회	'20.5.
	은평	은평구 통일로 67길 9, A동 2층	545㎡	6	자치구 민간위탁	(사)희망유니온	'23.1.1.~'25.12.31. *재위탁 1회	'20.6.
	동대문	동대문구 왕산로 210	481㎡	6	서울시 민간위탁	(사)희망유니온	'23.3.1.~23.12.31. *재위탁 1회	'20.12.
	노원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5 노원금융타워 9층	331㎡	6	자치구 민간위탁	(사)청소년과나란히	'20.9.1.~'23.8.31.	'20.9.
	성동	성동구 왕십리로 350 4~5층	314㎡	6	자치구 민간위탁	성동청년플랫폼	'22.10.1.~'25.9.30. *재위탁 1회	'20.12.
	마포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지상 1층 제P101호	264㎡	6	자치구 민간위탁	(사)플레이시드스쿨	'23.2.1.~'25.12.31. *재위탁 1회	'20.12.
	광진	광진구 능동로 245, 2~3층	385㎡	6	자치구 민간위탁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20.1.1.~'23.12.31 *재계약 1회	'21.1.
	서초	서초구 반포동 19-11	556㎡	6	서울시 민간위탁	(사)청년여성 문화원	'21.6.1.~'23.12.31.	'21.10.
	강북	강북구 노해로23길 123 (수유동) 1~3층	331㎡	6	자치구 민간위탁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2.1.26.~'24.12.31	'22.4.
	강서	강서구 화곡동 1170	602㎡	6	서울시 민간위탁	미담장학회 · 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콕	'22.3.21.~'23.12.31	'22.4.
	영등포	당산로 83, 2층	502㎡	4	자치구 직접운영(한시)	구의회 동의 시 공개모집 예정('24년)		'23.2
	도봉	도봉구 마들로11길 75	440.97㎡	6	자치구 위수탁 업무협약	도봉문화재단	'23.1.1.~'25.12.31.	'23.5.
	양천	양천구 오목로 359	386㎡	6	자치구 민간위탁	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	'23.5.1.~'26.4.30.	'23.5.
청년허브	은평구 통일로 684	1,786㎡	14	서울시 민간위탁	사단법인 씨즈	'21.1.1.~'23.12.31. *재계약 1회, 재위탁 1회	'13.4.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68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연계, 청년의 사회적 안전망 제공 및 고립·은둔 청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서울시 청년정책의 일선 집행체계로서 생활권 기반 청년 종합지원을 위하여
- 나.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 다. 청년 활력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10 (480.71㎡)
- 공간구성 : 상담실, 라운지, 공유주방, 회의실, 사무실 등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유형 : 시설형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 위탁업무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 사업 및 시설 운영
 - 청년지원정보 집적·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
 -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

-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
-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협력 사업
-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
- 시설·물품 등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등
- 소요예산 : 621,603천원 ('24년 예산편성안 기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청년시설 관리·운영에 대해 민간의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자원과의 적극적 연계 협력을 추진,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3. 7. 20.) : 적정

※ 작성자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이은지 (☎2133-4311)